

# 전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차 개정(전면 개정) 2020. 10. 08

제2차 개정(부분 개정) 2022. 12. 02

제3차 개정(부분 개정) 2023. 00. 00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주고등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4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제·개정 절차】** 이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 제6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7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삭제 (개정 `22.12.02.)

③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 제22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23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3장 학생 생활

### 제24조【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제25조【수업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⑦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⑧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26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범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7조【용모】**

-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교복을 착용하며,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 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2.12.02.)
- ③ 등,하교시 신발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발은 교내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류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제29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 ③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쳤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맞게 교육적으로 지도한다.

**제30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 제31조【소지 물품 조사】

- ① 제3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 제3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

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 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 제3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③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제3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제3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분리장소로 이동시키기 또는 가정학습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4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보건 업무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하되, 안전인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1조【징계 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4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10일(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한달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1일 이상으로 하고, 이수결과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제43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46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장 규정의 개정**

#### **제48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 **제49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제51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2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2023.12.00. 전주교-00000)**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일(2023년 12월 0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 생활지도 단계별 조치

단계	조치	조치내용	주 운영자
1	경고/상담	- 교사의 훈계 및 학생 상담	·담당교사
2	교실 안 지도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등	·담당교사
3	교실 밖 지도	- 반복적인 수업 방해 및 교사 지도 불응 시 - 방과 후 잔류 지도(1~2시간) - 방과 중 자기주도학습 운영(격리) - 보호자 통보 - 상담실, 특별실, 교무실, 교장실 이용	·학교관리자 ·학생안전인권부 ·전문상담교사 ·보호자협조
4	대체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창의적 대체 프로그램 운영 - 대체 프로그램 미이행 시 재 지도 - 지도 불응 시 징계 경고 - 학교관리자 학생·보호자 상담 및 보호자 역할 부여 - 상담실, 특별실, 교무실, 교장실 이용	·생활교육위원회 ·학교관리자
5	징계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 보호자 동참 불응 시 서면 징계 통보 -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교육지원청 (Wee 센터) 및 외부에 위탁교육 가능 - 지역 청소년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권고전학 학교알선	·생활교육위원회 ·학교관리자
6	외부연계 교육 및 조치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협조 - Wee 센터 위탁 - 징계 프로그램 이수 이후 최종적인 교육 조치 결정 (학교복귀, 인근 대안 교육 안내 등)	·교육지원청 ·Wee 센터 ·외부유관단체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3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b>3호 지도</b>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단 ①의 경우 학생안전인권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b>4호 지도</b>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단 ②의 경우 학생안전인권부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b>기타</b>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표 4] 징계 기준(제42조 관련)

구분	항	행위내용	징계					
			주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9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10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12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3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14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1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6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						
	1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8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수업	2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1	불온 문서(전자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2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23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4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5	수업을 거부한 학생						
	2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7	시험을 거부한 학생						
	28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29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구분	항	행위내용	징계					
			주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근태	30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한 학생 (개정 '22.12.02.)						
	31	미인정결석,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개정 '22.12.02.)						
	3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33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34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35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36	미인정결석 기간이 수업일수 1/3을 초과한 학생 (개정 '22.12.02.)						
약물	3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8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9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40	도박을 한 학생						
	41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2	불량 서적(음란서적)을 탐독한 학생						
	43	학생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44	불법 동영상 등의 자료를 시청한 학생 (개정 '22.12.02.)						
	45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금품	47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48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집단	49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50	불량 씨클에 가입한 학생						
	51	허가없이 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52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기타	53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54	동일학년에 3회 이상 동일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5	징계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전주고등학교>

일 자	2023. 11. 1. (금)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내 용	교시	수업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장00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00(5/1,7/5)
특이 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보호자님께!**

0000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 (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

2023년 00월 00일

전 주 고 등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OOO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

<b>성찰하는 글쓰기</b>				(1/1 쪽)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